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구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9명, 6급 8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6.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3개”를 “4개”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두고, 각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0조제9항 후단 중 “11명을”을 “15명을”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복원관리과장·디지털혁신과장”을 “복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88”을 각각 “323”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를 “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5”를 “3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u>3개</u> (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신 설></u>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 ----- ----- <u>4개</u> ----- ----- ----- -----.
	<u>제46조의2(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두고, 각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 략)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행정한류담당관, 국제디지털협력과장, 지방규제혁신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지진방재정책과장, 재난보험과장,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디지털혁신과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2명,

--- 15명을, -----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복원관리과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과 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 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 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8</u>	<u>323</u>	+35
일반직 계	<u>288</u>	<u>323</u>	+35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u>2</u>	<u>3</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85</u>	<u>319</u>	+34